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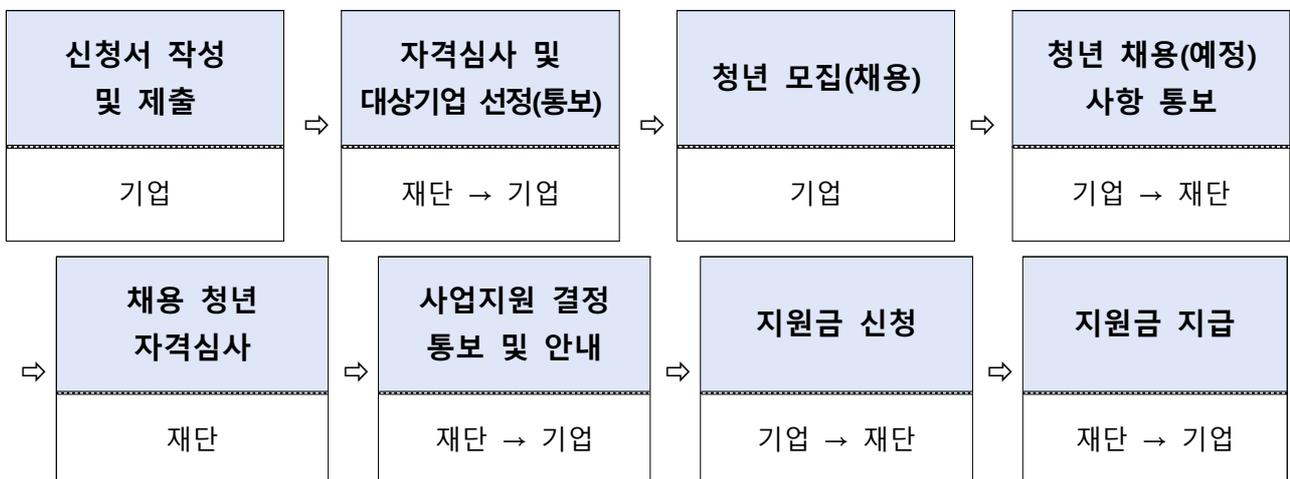
-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2021 워라밸 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워라밸 우수 중소기업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과 삶의 균형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 워라밸 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2월 19일
(재)울산일자리재단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12.
- 지원대상 : 미취업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워라밸 우수 중소기업 14개사
-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직원(청년) 임금에 대하여 월 임금의 80% 지원(1인당 최대 160만원, 9개월)
* 1인 월 200만원 기준 80%(최대 160만원)지원, 초과분은 기업 부담
 -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게 직업역량강화 교육 및 멘토링 지원
 - 기업별 환경개선장려금(불입2) 지원(1개사당 3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 지원절차



2

신청자격 ▶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공고일 기준 본사가 울산지역(사업자등록증 기준)에 소재하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의 워라벨 우수 중소기업*

* 워라벨 우수기업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제도, 유연근무제도, 직원복지비 지급, 가족 돌봄 휴가·휴직 운영, 연가 제도 활성화, 기타직원복지제도 등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함

- '20년 평균 근로자 수 대비 고용유지 또는 증가 사업장(사업참여시점 기준)
- 공고일 이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고, '21. 1. 1. 기준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관련 법적 의무 이행 사업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파견근로자·기간제근로자 등은 정규직에 해당되지 않음

<참여 제외 사업장>

- ①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②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제외 업종
 - 전화·방문고객 단순 상담,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接客 및 판매,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 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등
- ③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갬블링 및 베틱업, 무도장 운영업 등
-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⑤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⑥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 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⑦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⑧ 모집 분야가 특정 성별만 참여 가능하거나 요구하는 업종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2. 22.(월) ~ 3. 5.(금) ※ '21. 3. 5.(금)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해서만 인정
-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 접수처
 - 방문·등기우편 : 울산일자리재단(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5층)
 - 이메일 : sia9010@ujf.or.kr ※ 신청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신청기관 : (재)울산일자리재단 고용유지개선팀(052-283-7934)
-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서류명	발급방법 및 발급처	비고
① 참여 신청서(서식1)	소정양식	울산시청·일자리재단 홈페이지 (www.ulsan.go.kr/ www.ujf.or.kr)
②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④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⑤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20. 월별 각 1부, '21. 신청일 기준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 정부24	(www.hometax.go.kr) / (www.gov.kr)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⑧ 2019년도 결산재무제표	근무처	
⑨ 위라벨 기업임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 '19. 1. 1. ~ 신청일까지 해당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에 한하여 알맞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해당 제도 이용 근로자수에 따라 가산점 적용)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020년 월별 각 1부(한달 기간 설정), 2021년 신청일 기준 1부.
예) (1월분) 2020. 1. 1.~ 1. 31./(2월분) 2020. 2. 1. ~2. 29./(3월분)... 각 1부, (신청일분) 신청일 기준 1부.

4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자격요건 확인 및 심사기준표(붙임1) 적용, 고득점순(상위 점수 순서) 선정
- 청년 인건비 지원은 기업별 1명 원칙(2명 이상 신청 시 대기순번 작성)
- 선정발표 : 2021. 3. 16.(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유선 통보
-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 별도 안내

5 신청시 유의사항

- 참여 청년은 지원기간 동안 울산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타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울산광역시로 전입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등과 관련하여 허위 내용 작성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여기업은 참여 청년과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후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참여 청년 및 참여기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6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분

[부정수급의 주요유형]

- 지원금(보조금)의 목적외 사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 참여제한 자를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 고용관련서류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관련서류 허위작성

[부정수급의 처분]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울산광역시 모든 일자리 관련사업 참여제한
- 울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재 조치 등

7

기타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 및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르도록 합니다.
- 문의처 : 울산일자리재단 고용유지개선팀(052-283-7934)

붙임 1. 기업 심사기준 및 점수표 1부.

2. 환경개선장려금 사용기준 1부. 끝.

붙임 1 기업 심사기준 및 점수표

□ 기업 심사기준

심사항목	항목	세부심사기준
경영 안정성 및 고용 환경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기업유지를 위한 재정 안정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부채비율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미만 ~ 0% 범위 (30) - 80% 미만 ~ 50% 이상 범위 (20) - 100% ~ 80% 이상 범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의 지속성 여부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설립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상 (30) - 5년 미만 ~ 3년 이상 (20) - 3년 미만 ~ 2년 이상 (10) - 2년 미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임금수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산출내역서(본봉) 기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210만원 이상 (20) - 월 195~210만원 미만 (15) - 월 185~195만원 미만 (10) - 월 185만원 미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근로자 네트워크 형성 지원 가능 여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 (10), 불가능 (0)
기 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5) ■ 관련 증빙서류 누락 여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 없는 경우 (5), 체납액 있는 경우 (0) ■ 누락이 없는 경우 (5), 누락이 있는 경우 (0)
가 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 증가한 근로자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월별 근로자 평균 대비 현재 근로자수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명 (4) - 3~4명 (6) - 5~6명 (8) - 7명 이상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 일자리사업 참여율 (20) ※ 전년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박람회 참여 (5), 채용 (5) ■ 울산청년 역량강화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5) ■ 일자리 지키기 협약 참여기업, 2030 U-Dream, 청년과 함께 강소기업 다시보기 지원사업 중 하나 참여 (5)

□ 근로자 일·생활 균형 추진 점수표

구 분	시행여부(A)		활용인원 가산(B) (2019. ~ 2021. 현재)		합 계 (A+B)
	여, 부	점수	인원수	가점	
계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제도 이용(20)					
	출산휴가(5)	여(5), 부(0)			
	육아휴직(5)	여(5), 부(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5)	여(5), 부(0)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육아휴직(5)	여(5), 부(0)			
유연근무제도 이용(20)					
	시차출근제(5)	여(5), 부(0)			
	시간선택 근무제(5)	여(5), 부(0)			
	재택근무제(5)	여(5), 부(0)			
	원격근무제(5)	여(5), 부(0)			
직원복지비 지급(20)					
	자녀학자금 지급(5)	여(5), 부(0)			
	보육수당 지급(5)	여(5), 부(0)			
	기타 현금성 복지비 지급(5)	여(5), 부(0)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5)	여(5), 부(0)			
가족돌봄 휴가, 휴직 이용(10)					
연가제도 활성화(15)					
	휴가 및 연가 사용(5)	여(5), 부(0)			
	연가저축제도(5), 반반차 도입(5)	여(5), 부(0)		가산미적용	
가정의 날 이용(10)					
	가정의 날 이용(10)	여(5), 부(0)		가산미적용	
기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제도(5)					
	기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제도(5)	여(5), 부(0)		가산미적용	

※ (활용실적가산방법) 일·생활 균형 활용인원 ÷ 고용보험가입자수 × 항목점수 = 지표점수
 예) 고용보험가입자 10명중 출산휴가 3명, 시차출근제 1명 활용이 있는 경우 : 2점 가산
 - 육아휴직 3명 ÷ 10명 × 5 = 1.5점, 시차출근제 1명 ÷ 10명 × 5 = 0.5점

구분		지원가능항목
근로복지		주거비, 건강검진, 상담 및 의료지원, 근로자 휴양시설 지원 등
환경 개 선	구내식당	냉장고,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선풍기, 전기히터, 커피머신, 청소기, 정수기, 밥솥, 제빙기, 싱크대, 식탁, 의자, 수납장, 제습기, 온수기
	사무실 탕비실 공장	냉난방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청소기, 제습기, 전기히터, 선풍기, 커피머신, 스타일러, 캐비닛, 정수기, 토스트기, 쇼파, 테이블, 전자레인지, 온수기, 전기난로, 열풍기, 안전화 건조기, 제빙기, 이동에어컨
	휴게실 체력단련실	냉장고,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전기히터, 정수기, 선풍기, 커피머신, 토스트기, 청소기, TV, 침대, 전기난로, 안마의자, 제습기, 열풍기, 전자레인지, 안전화 건조기, 제빙기, 욕아 관련용품, 탁구대, 설치형 헬스기구, 쇼파, 테이블, 의자, 수납장, 캐비닛, 신발장
	기숙사	냉장고,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선풍기, 청소기, 비데, TV, 제습기, 밥솥, 보일러, 세탁기, 건조기, 에어프라이기, 쇼파, 테이블식탁, 의자, 싱크대, 옷장, 침대, 신발장, 온수기
	화장실 샤워실	비데, 핸드건조기, 건조기, 세탁기, 온수기
	공사	- 분진, 발암물질, 소음 등 제조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공사 - 화장실, 샤워실, 기숙사, 식당,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 ※ 임대공장 공사지원 제외, 신축 및 사업기간내 완료할 것으로 판단되는 공사 제외
지원불가항목		- 서류류, 의류 일체 - 사무실 및 사업장 전체 인테리어 - 사무용 기기, 가구(컴퓨터, 책상, 의자, 회의용 테이블 등) - 일회성 및 소모성 물품 - 지원가능항목 기재 외 항목 사전심사 필수